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8-631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. 5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주차장법」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
-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유주차구획 지정 반영
-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도입

주요내용

- 주차장법 제3조 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, 안전관리실태조사 반영
(안 제2조의2(주차장 수습실태조사), 안 제2조의3(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))
- 주차장법 제19조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주차공간 제공
(안 제20조 제1항(부설주차장의 개방))
-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실률 완화 및 주차관리 활성화 추진
(안 제10조의2(공유주차))
-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, 과태료 부과 등 설치기준 마련
(안 제19조 제4항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)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4. 8. ~ 2021. 4. 28.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불임 1 >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2조의2) 중 “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” 를 “법 제4조” 로 하며,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조사) ① 시장은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3조 및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 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(이하 “수급실태조사” 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수급실태조사 대상

가.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,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나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주차수요

2. 수급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.

3. 수급실태조사 내용

가.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, 소재지, 규모,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

나. 시간대별 주차차종, 주차위치, 주차대수,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

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4. 수급실태조사 방법

가.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

나.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·야간주차, 적법주차·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

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,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조의3(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)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

2.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

3.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, 법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공유주차) ① 시장은 유휴 거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경우,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·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,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(원스톱)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0조의 제목 “(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, 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 개방)” 을 “(부설주차장의 개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비주거용” 을 “주거용·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”으로, “야간개방” 을 “개방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 실·과 | | 교통정책과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입 안 자 | 실·과장 직위·성명 | 교통정책과장 조 성 곤 |
|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주차장팀장 안 정 은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 | 유호중 (행정 2957) |

[별표 2]

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(제7조 및 제10조 관련)

| 급 지 구 분 | 30분 기본요금 (1회 주차 1구역 최초 30분) | 10분당가산요금 (30분 초과 시 10분마다) | 1일 주차요금 | 월 정기 주차요금 (선불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급지 | 600원 | 300원 | 9,000원 | 80,000원 |
| 2 급지 | 400원 | 200원 | 4,500원 | 50,000원 |
| 3 급지 | 300원 | 200원 | 4,500원 | 40,000원 |
| 4 급지 | 300원 | 200원 | 4,500원 | 20,000원 |

* 화물차 전용주차장 주차요금은 3급지에 준하며, 2.5톤 이상 4톤 미만은 주차요금의 2배, 4톤 이상은 주차요금의 3배를 부과하고, 월 정기 주차요금은 [별표 4] 차고지 주차요금에 따름

-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.
- 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주간 : 08:00 ~ 19:00
 - 야간 : 19:00 ~ 다음 날 08:00
-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,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.
 - 1급지 : 상업지역("나"목의 주차장 제외)
 - 2급지 :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
 - 3급지 : 주거지역, 녹지지역("나"목의 주차장 제외) 및 환승주차장(공업지역 제외)
 - 4급지 : 공업지역("나"목의 주차장 제외)
-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월 정기 주차요금은 주간 20,000원, 야간 15,000원, 전일 30,000원으로 하며, 예외 사항으로 수암동 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월 정기 주말·공휴일 주차 요금은 5,000원으로 한다.
- 철도 환승목적으로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이용 확인증 또는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3급지 요금을 적용하며,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. 다만, 월 정기 주차권은 주차장 관리자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주차요금은 지역특성 및 차종에 따라 정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- 주차요금 감면기준은 다음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하되, 주차요금을 이용자 사정에 의하여 미납한 자 및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
 - 안산시에서 발행한 자가용 부제 운행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부과한다.
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또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(자동차 외부에 저공해 자동차 표시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)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. 다만,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,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면한다.
 -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관련증서를 지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

경우 주차 후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,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페센트를 감경 한다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 후 1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,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페센트를 감경한다.

마. 관계법령(조례를 포함)에 따라 국세청장,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(경기도의 경우 유공납세자)임을 증명하는 표지(스티커) 등을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.

바. 시책업무 추진목적으로 시장이 발행하는 주차권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3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한다.

사. 외교사절, 외교관 및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자동차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
아. 「공직선거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,000원을 면제·할인할 수 있다.

자.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유효기간내의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본인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

1) 우수자원봉사증 : 주차요금의 50페센트 감경

2) VIP자원봉사증 : 주차 후 1시간까지 전액감면하고 1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페센트 감경

차. 「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」 제6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후 3시간까지 전액감면하고 3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50페센트 감경한다. 이 경우 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별표의 행복플러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카. 「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페센트를 감경한다. 이 경우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 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8.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가.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, 공업지역, 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보호지구

: 09:00 ~ 19:00 (토요일 09:00 ~ 14:00)

나. 상업지역(일반 상업지역중 공용시설 보호지구 제외), 준주거지역 : 09:00 ~ 23:00

다. 환승(역세권)주차장 : 06:00 ~ 22:00

9. 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30분으로 징수하되,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를 기준으로 가산하여 징수한다.

10.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11. 주차요금은 1일(00:00~24:00)동안 주차장 운영시간내에 이용한 시간에 한하여 부과한다. 다만, 주차요금이 「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」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「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」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.

[별표 3]

주차장 현황(제13조제1항제2호 관련)

| 급지 | 주차장명 | 위 치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대림프라자앞주차장 | 고잔동 719 |
| 3 | 신천길앞주차장 | 원곡동 991-2 |
| 3 | 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 | 원곡동 991-5 |
| 3 | 한대앞역환승주차장 | 이동 622-3 |
| 3 | 중앙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723 |
| 3 | 고잔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679-1 |
| 3 | 안산역환승주차장 | 원곡동 380-1 |
| 3 | 성포공원내주차장 | 성포동 593-14 |
| 3 |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| 초지동 670-12 |

< 불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주차장 확보 노력)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택 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<u>시장은</u> 이에 대하여 행정적 ·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 | <p>제2조(주차장 확보 노력) ----- ----- ----- <u>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</u> <u>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<u>제2조의2(주차장 수급실태조사) ① 시장</u> <u>은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</u> <u>다) 제3조 및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</u> <u>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조</u> <u>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</u> <u>수급실태조사(이하 “수급실태조사”</u> <u>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수급실태조사 대상</u></p> <p><u>가.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</u> <u>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</u> <u>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</u> <u>되,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</u> <u>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</u></p> <p><u>나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</u> <u>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주차</u> <u>수요</u></p> <p><u>2. 수급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한다.</u></p> <p><u>3. 수급실태조사 내용</u></p> <p><u>가.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</u> <u>태, 소재지, 규모, 주차요금 및</u> <u>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|
| | |

나. 시간대별 주차차종, 주차위치, 주차대수,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

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4. 수급실태조사 방법

가.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

나.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·야간 주차, 적법주차·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

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 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,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3(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)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라 한다)를

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

총족여부

2.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

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

여부

3.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

로 하되, 법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

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제2조의2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시
장은 「주차장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
한다)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
주차장 확보율이 60퍼센트 미만인 지
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
지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조의4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--

----- 법 제4조 -----

-----.

제10조의2(공유주차) ① 시장은 유휴 거
주지 전용주차구획을 여러 사람이 공
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전용
주차구획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
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주차
구획을 제공하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
이용자에게는 거주지 전용주차구획 배
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을 지
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공유사
업 시행을 위하여 공유주차구획의 제
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
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

② · ③ (생 략)

제19조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

준) ① ~ ③ (생 략)

〈신 설〉

제20조(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,

학교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개방) ①

시장은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등(이하 이 조에서는 “부설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 략)

경우, 시장은 공유주차구획 운영에 대하여 해당 선정업체에 지도·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

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,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(원스톱)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0조(부설주차장의 개방) ① -----

----- 주거용·비주거용 민영 및 공영 -----

--- 개방 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

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(제7조 및 제10조 관련)

| 급 지 구 분 | 30분 기본요 금 (1회주 차 1구역 최초 30분) | 10분당 가산요 금 (30분 초과시 10분마 다) | 1일 주차 요금 | 월 정기 주차요금 (선불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| | 주간 | 야간 | 전일 | 주말 · 공휴일 | |
| 1 급지 | 600원 | 300원 | 9,000 원 | | | 80,00 0원 | | |
| 2 급지 | 400원 | 200원 | 4,500 원 | | | 50,00 0원 | | |
| 3 급지 | 300원 | 200원 | 4,500 원 | | | 40,00 0원 | | |
| 4 급지 | | | | 20,0 0원 | 15,0 0원 | 30,00 0원 | 5,000 원 (수암 동 지역) | |

1. ~ 2. (생 략)

3.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,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가. 1급지 : 상업지역(“나” 목의 주차장 제외)

나. 2급지 :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

다. 3급지 : 주거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(“나” 목의 주차장 제외) 및 환승주차장

라. 4급지 :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노동자 우선 주차제 시행 지역의 주차장 중 시장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
[별표 2]

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(제7조 및 제10조 관련)

| 급 지 구 분 | 30분 기본요 금 (1회 주차 1구역 최초 30분) | 10분당가산 요금 (30분 초과 시 10분마다) | 1일 주차요금 | 월 정기 주차요금 (선불)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 급지 | 600원 | 300원 | 9,000원 | 80,000원 |
| 2 급지 | 400원 | 200원 | 4,500원 | 50,000원 |
| 3 급지 | 300원 | 200원 | 4,500원 | 40,000원 |
| 4 급지 | 300원 | 200원 | 4,500원 | 20,000원 |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, 시장이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가. 1급지 : 상업지역(“나” 목의 주차장 제외)

나. 2급지 :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주차수요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

다. 3급지 : 주거지역, 녹지지역(“나” 목의 주차장 제외) 및 환승주차장(공업지역 제외)

라. 4급지 : 공업지역(“나” 목의 주차장 제외)

4.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월 정기 주차요금

| <p>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차장</p> <p>4. ~ 5. (생 략)</p> <p>6. 가. ~ 라. (생 략)</p> <p>마. 관계법령(조례를 포함)에 따라 국세청장,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<u>성실납세자</u>임을 증명하는 표지(스티커) 등을 부착한 차량은 표지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.</p> <p>6. 사. ~ 카. (생 략)</p> <p>7. ~ 10. (생 략)</p> | <p>은 주간 20,000원, 야간 15,000원, 전일 30,000원으로 하며, 예외 사항으로 수암동 지역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월 정기 주말·공휴일 주차 요금은 5,000원으로 한다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관계법령(조례를 포함)에 따라 국세청장,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<u>성실납세자</u>(경기도의 경우 <u>유공납세자</u>)임을 -----.</p> <p>7. 사. ~ 카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|------|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<p>[별표 3]</p> <p>주차장 현황(제13조제1항제2호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2px;">급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2px;">주차장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2px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1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대림프라자앞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동 719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신천길앞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원곡동 991-2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3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원곡동 991-1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한대앞역환승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이동 622-3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중앙역환승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동 723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역환승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동 679-1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3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안산역환승주차장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원곡동 380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성포공원내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성포동 593-14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초지동 670-1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급지 | 주차장명 | 위 치 | 1 | 대림프라자앞주차장 | 고잔동 719 | 3 | 신천길앞주차장 | 원곡동 991-2 | <u>3</u> | <u>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</u> | <u>원곡동 991-1</u> | 3 | 한대앞역환승주차장 | 이동 622-3 | 3 | 중앙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723 | 3 | 고잔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679-1 | <u>3</u> | <u>안산역환승주차장</u> | <u>원곡동 380</u> | 3 | 성포공원내주차장 | 성포동 593-14 | 3 |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| 초지동 670-12 | <p>[별표 3]</p> <p>주차장 현황(제13조제1항제2호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2px;">급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2px;">주차장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 padding: 2px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1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대림프라자앞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동 719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신천길앞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원곡동 991-2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3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원곡동 991-5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한대앞역환승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이동 622-3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중앙역환승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동 723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역환승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고잔동 679-1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3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안산역환승주차장</u>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<u>원곡동 380-1</u>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성포공원내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성포동 593-14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3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초지동 670-1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급지 | 주차장명 | 위 치 | 1 | 대림프라자앞주차장 | 고잔동 719 | 3 | 신천길앞주차장 | 원곡동 991-2 | <u>3</u> | <u>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</u> | <u>원곡동 991-5</u> | 3 | 한대앞역환승주차장 | 이동 622-3 | 3 | 중앙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723 | 3 | 고잔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679-1 | <u>3</u> | <u>안산역환승주차장</u> | <u>원곡동 380-1</u> | 3 | 성포공원내주차장 | 성포동 593-14 | 3 |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| 초지동 670-12 |
| 급지 | 주차장명 | 위 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대림프라자앞주차장 | 고잔동 719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신천길앞주차장 | 원곡동 991-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3</u> | <u>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</u> | <u>원곡동 991-1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한대앞역환승주차장 | 이동 622-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중앙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72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고잔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679-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3</u> | <u>안산역환승주차장</u> | <u>원곡동 380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성포공원내주차장 | 성포동 593-14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| 초지동 670-1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급지 | 주차장명 | 위 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대림프라자앞주차장 | 고잔동 719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신천길앞주차장 | 원곡동 991-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3</u> | <u>외국인주민센터앞주차장</u> | <u>원곡동 991-5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한대앞역환승주차장 | 이동 622-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중앙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723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고잔역환승주차장 | 고잔동 679-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3</u> | <u>안산역환승주차장</u> | <u>원곡동 380-1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성포공원내주차장 | 성포동 593-14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초지동 화물차 전용주차장 | 초지동 670-1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8-631 |
|------------|-------|

제안년월일 : 2021년 6월 18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 수정함.

주요골자

-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기에 관한 사항 삭제.(안 제2조의2제1항제2호, 안 제2조의3제3호)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.

안 제2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3. 수급실태조사 내용

가. 건축물의 종류별로
주차장의 형태, 소
재지, 규모, 주차
요금 및 운영방법
등에 관한 사항

나. 시간대별 주차차
종, 주차위치, 주
차대수, 주차장 회
전율 및 적법 주차
여부 등의 주차실
태

다. 그 밖에 시장이 필
요하다고 정하는
사항

4. 수급실태조사 방법

가. 주차시설현황조사
는 시행규칙 별지
제1호서식에 따른
주차시설로 구분
조사

나. 주차수요조사는 주
간주차·야간주차,
적법주차·불법주
차로 각각 구분 조
사

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
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
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
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
와 비교하여 주차시설

2. ~ 3.(개정안 제3호부

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② ~ ④(개정안과 같음)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| <p>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,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|
| <u><신 설></u> | <p>제2조의3(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) 시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 관리실태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.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</p> <p>제2조의3(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2.(개정안과 같음)</p> |

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
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
치 여부

3. 안전관리실태조사의

주기는 3년으로 하되,
법 제3조에 따른 수급
실태조사와 함께 실시
할 수 있다.

<삭 제>